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승미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830호 및 제 1517 호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2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반려동물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부 동물사육현장 및 동물원, 동물카페 등에서 동물 본연 습성에 반하는 행위강요 및 부상 방치, 열악한 사육환경

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에 동물보호 범위의 확대 및 실질적인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.

- 이에 제830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「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」에 해당하는 동물원을 운영하는 자의 동물원의 동물 관리 및 보호에 따른 준수사항 (관람·체험·공연 등)을 규정하고 시장이 규정준수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
- 제1517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라 동물의 정의를 명시함에 이어 「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」에 근거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시설 및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시설에서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할 경우에는 동물이 사람들의 접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시장의 노력이 수반되는 부분을 명시함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
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